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8

발의연월일: 2024. 6. 13.

발 의 자:정준호·강훈식·김남근

김한규 • 민병덕 • 민형배

박홍배 · 용혜인 · 이광희

이연희 · 정성호 의원

(119]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개정 「상법」은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를 도입하여 9 5%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지배주주가 5%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소수 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.

그러나 그 이후 일부 법원판결이 소수주주에게 불리하게 해석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음. 즉 자기주식은 주주 공동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자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는 물론이고 모회사인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에도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지배주주가 자회사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자회사의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데 악용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지배주주 인정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% 이상을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, 발행주식총수 산 정 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, 보유주식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을 보유주식수에서 제외하고, 매매가액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일정 기간 비치・열람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축출 남용을 방지하여 소수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360조의24).

법률 제 호

# 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0조의24제1항 중 "발행주식총수"를 "발행주식총수(자기주식은 제외한다)"로, "계산으로"를 "계산과 자기의 명의로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주식을"을 "주식(자기주식은 제외한다)을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주식도"를 "주식(자기주식은 제외한다)도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제4항제3호의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하여 최근 3개 영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주주총회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의 이전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행사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) 제360조의2 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주

식의 매도를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아 정 제360조의24(지배주주의 매도청 제360조의24(지배주주의 매도청 구권) ① 회사의 발행주식총수 구권) ① -----발행주식총수 의 100분의 95 이상을 자기의 (자기주식은 제외한다)-----계산과 <u>자기의 명의로</u>-----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 (이하 이 관에서 "지배주주"라 한다)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는 회사의 다른 주주(이하 이 관에서 "소수주주"라 한다) 에게 그 보유하는 주식의 매도 를 청구할 수 있다. ② 제1항의 보유주식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모회사와 자회 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다. -----주식(자기주식은 제외 이 경우 회사가 아닌 주주가 한다)을\_----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가 보유하는 주식도 그 주주가 보 ---주식(자기주식은 제외한다) 유하는 주식과 합산한다. <u>도</u>----. ③ ~ ⑨ (생 략) ③ ~ ⑨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① 제4항제3호의 매매가액의 산정 근거 및 적정성과 관련하 여 최근 3개 영업연도의 재무

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주주총 회 회일의 2주 전부터 주식의 이전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하 는 날까지 본점에 비치하고 주 주로 하여금 영업시간 내에 이 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